

제357회 임시회
2017. 07. 12.(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동의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7년 06월 26일
- 회부일자 : 2017년 06월 28일

3.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 제59조의9, 제59조의10에 따라 장애인 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조치, 사후관리 등의 다양한 제반업무 수행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4. 주요내용

- 위 치 : 충청북도 내
-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
- 수탁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충청북도에 소재(분사무소의 경우, 사무실 및 대표자가 있을 것)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사 업 비 : 95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2017.8.~12.까지
- 주요사무
 -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그 밖에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5. 검토의견

○ 법적 근거 및 동의안의 내용

-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 제59조의9, 제59조의1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8, 제36조의9, 제36조의10,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4, 제43조의5, 제43조의6에 따라 충청북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려는 내용으로,
- 동 시설의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의 법적 제출 절차 등은 적정함.

○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민간에게 위탁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일반적으로 단일 서비스 보다는 공공이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함에 따른 효과는 경쟁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서비스 전달비용 절감, 서비스의 질적 향상, 전문성 제고, 서비스 수요에 대한 신속적 대응이라 할 수 있음.

1)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④ (생략)

-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을 기반으로 장애인 인권상담이나 서비스 연계의 소극적 지원에서 벗어나 장애인 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조치,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장애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홍보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 피해 장애인에 대한 One-Stop 지원 절차 추진으로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게 사후 관리까지 지원하는 장애인의 개별 상황에 맞춘 권리구제 전담기관으로서 피해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사무의 특성상 전문성, 효율성, 창의성, 헌신성과 인권감수성 등이 중요한 만큼 학문적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민간위탁 운영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 다만,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 아울러, 향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수탁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현장에서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권리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장애인 학대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

참 고 ①

시·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현황

(기준: 6.30일 현재)

시도별	위탁여부	위탁기관 (위탁기간)	선정방법	비고
서울	부	계획중		-
부산	부	계획중		-
대구	부	계획중		-
인천	여	(사)인천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 (’17.6월~’20.6월)	공모	· 위탁체결(6.8.)
광주	부	계획중		-
대전	협약예정	’17.8월~’19.12월	공모	· 공고 : 6.8.~6.26. · 접수 : 6.27.~6.29.
울산	협약예정	’17.8월~’20.8월	공모	· 공고 : 6.13.~6.23. · 접수 : 6.23.~6.27.
세종	부	계획중		-
제주	부	계획중		-
경기	부	계획중		-
강원	협약예정	’17.8월~’19.12월	공모	· 공고·접수 : 6.12~6.30.
충북	공고중	(위탁일로부터 3년간)	공모	· 공고·접수 : 6.28.~7.11.
충남	부	계획중		-
전북	협약예정	(위탁일로부터 3년간)	공모	· 공고·접수 : 6.22~6.26.
전남	부	계획중		-
경북	부	계획중		-
경남	여	(사)경남장애인권리옹호 네트워크 (’17.7월~’20.7월)	공모	-

※ 위탁 2(인천,경남), 협약예정 4(대전,울산,강원,전북), 공고중 1개 (충북),
위탁계획중 10(서울,부산,대구,광주,세종,제주,경기,충남,전남,경북)

□ 장애인복지법

○ 제59조의8(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와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
3.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4.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 및 치료와 피해장애인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장애인학대 예방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 제59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2.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5.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
6.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7.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둔다.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 ③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기준·운영, 상담원의 자격·배치기준,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9조의10(사후관리 등)

- 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장애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피해장애인의 안전 확보, 장애인학대의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피해장애인의 보호자(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피해장애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⑤ 피해장애인의 보호자·가족은 제2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에 참여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제36조의8(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기준)

① 법 제59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은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및 대기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운영방침 및 업무분장
2. 운영시간
3. 상담자 관리 방법

4. 재무·회계 등의 장부 작성 및 비치

5. 그 밖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6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3.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5. 변호사
6. 그 밖에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권익옹호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제36조의10(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9조의9제3항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제36조의8 및 제36조의9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기준 및 상담원 자격기준의 충족 여부
2. 장애인권익옹호 관련 업무의 수행실적 및 운영계획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9조의9제3항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43조의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법 제59조의9제1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정책의 개발
2.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장애인학대 관련 통계의 생산 및 제공
4. 장애인권익옹호에 관한 국제 교류

○ 제43조의5(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법 제59조의9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
2.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3.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 제43조의6(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설치·운영기준)

- ① 영 제36조의8제3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설치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 ② 영 제36조의8제3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운영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